

청년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2024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고령군에서는 관내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4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 4. 30.

고령군수

I.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4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 나.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9개월간)
- 다. 신청기간 : 2024. 4. 30.(화) ~ 5. 14.(화) [15일간]
- 라. 사업량 : 90명 정도
- 마. 사업내용 : 최대 8개월 간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연 최대 40만원)
- 바.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 공고일(4.30.) 기준 1978. 5. 1. ~ 2006. 4. 30. 출생자 해당

- 고령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거주 예정인 자는 대상자 선발 공고 예정일(5.30.)로부터 30일 이내 고령군 주민 등록 전입 조건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 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고령군 청년이면 신청 가능

※ 사실상 영리에 해당하는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산림조합 포함), 은행권 등은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인정

사.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 : 2024. 5. 30.(목)

아. 과년도 고령군「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선발 시 후순위 선발 예정

자. 지원 제외 대상 :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① 정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 ② 학교,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사회단체,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학원
- ③ 소비·향락업체, 부동산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등
- ④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고령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II.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1인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연 최대 40만원

나. 지원기간 : 최대 8개월 (24년 3월분 ~ 10월분)

- 1) 대상자 선발 후 당해 연도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교통비를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 대상자는 고령군(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소재지는 고령군이 아니라 타 지역이어도 상관 없음

다. 지원방법 : 7월 (3~6월분/4개월), 11월 (7~10월분/4개월) 지원금 지급

라. 지급절차

- 1) 대상자 지원금 지급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7월 초, 11월 초)
- 2) 군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 단, 전출·퇴사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군에 바로 보고하여야 함

- 3)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7월 말, 11월 말)

마. 지급신청 방법 (대상자 선발 후 지원금 청구 시)

1) 대상자

- 7월 초, 11월 초에 고령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고령군청 방문 하여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지급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지원금 지급함

2) 제출서류 (지급신청 시 7월, 11월)

신 청 서 류	비 고	발 급 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필 수	서식 4
② 재직증명서 (지급 신청일 기준) - 중소기업 근로 확인용	필 수	신청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3) 지급신청 기간

- 7월(3~6월 분/4개월) → 7. 1. ~ 7. 10.
- 11월(7~10월분/4개월) → 11. 1. ~ 11. 10.

바. 지원중지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이 확인되는 경우
- 2)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 대상자 선발 후 중도 퇴사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사항

- 1) [중도퇴사자] 해당 월의 실 근무일이 총 근무일의 50% 이상이면 전액 지급, 50% 미만이면 미지급
- 2) [전출자] 전출일이 해당 월 15일 이전이면 미지급, 15일 이후이면 전액 지급
- 3) 지원기간 중 생일이 지나 만나이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는 계속 지원함

※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방식 예시)

- (5월에 선발된 대상자가 6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 6월분은 실 근무일이 총 근무일의 50% 미만이므로 미지급되며,
7월에 3~5월분만 지급 신청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교통비 15만원만 지급
- (5월에 선발된 대상자가 7월 25일 자로 연령 요건인 45세를 초과한 경우)
 - 당해연도 전액 지원 가능
- (5월에 선발된 대상자가 9월 20일에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이 해당 월 15일 이후이므로 해당 월분까지 지급
 - 7월에 3~6월분(4개월) 지급 신청하여 20만원 지급, 11월에 7~9월분(3개월) 지급 신청하여 15만원 지급
- (5월에 선발된 대상자가 4월 15일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경우)
 - 4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7월에 4~6월분(3개월) 지급 신청하여 15만원 지급,
11월에 7~10월분(4개월) 지급 신청하여 20만원 지급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모집인원 : 90명 정도

나. 모집기간 : 24. 4. 30.(화) ~ 5. 14.(화) [15일간]

※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일 : 24. 5. 30.(목)

※ 대상자 선발 공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다. 모집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1)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고령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 생활복지 - 청년지원사업 -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글쓰기
- 2) 방문 접수 :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라. 제출서류(필수)

신 청 서 류	비 고	발 급 처
①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필 수	서식 1,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1부	필 수	서식 3
③ 신분증 복사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 수	신청인
④ 재직증명서 1부	필 수	신청인
⑤ 4대보험 가입 확인서	필 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발급 가능
⑥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해당자	신청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V.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발

가. 자격심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대상자 확정
 - (1차) 연령·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중복수혜 여부 조회
 - (2차) 선정 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사 후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선발 예정자(90명)를 초과할 경우, 아래 심사항목 합산 고득점자 순 선발

※ 자체심사 결과 동점자는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거주기간은 고령군에 최근 전입한 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산정함

[심사기준 배점표]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 점
계		100점
1. 소득수준	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30
	나. 80% 이상 ~ 100% 미만	28
	다. 100% 이상 ~ 120% 미만	26
	라. 120% 이상 ~ 150% 미만	24
	마. 150% 이상 ~ 180% 미만	22
	바. 180% 이상	20
2. 연령	가. 2001년 ~ 2006년생	30
	나. 1996년 ~ 2000년생	28
	다. 1991년 ~ 1995년생	26
	라. 1986년 ~ 1990년생	24
	마. 1981년 ~ 1985년생	22
	바. 1978년 ~ 1980년생	20
3. 근무기간	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0
	나. 1년 이상 ~ 2년 미만	28
	다. 2년 이상 ~ 3년 미만	26
	라. 3년 이상 ~ 4년 미만	24
	마. 4년 이상 ~ 5년 미만	22
	바.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20
4. 사회적 배려자	가. 취업보호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10
	나. 취업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0
	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10

※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선정평가표 점수 배점이 높음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과년도 유사사업 참여자 후순위 선발 예정

참고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 인, 원)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수준 조회

나. 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일 : 24. 5. 30.(목)

※ 대상자 선발 공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2) 대상자 선발결과 :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다. 사업일정



VI.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본 지원금 수령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54-950-6589)